

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3. 9. 8.

제 출 자 홍경표위원장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-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.(안 제2조)
- 위원의 임기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.
(안 제3조)
- 위원회 기능은 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하는 것으로 함.(안 제4조)
- 윤리심사 요구와 방법, 윤리심사안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5조)
- 윤리심사 요구기한, 윤리심사 회부 시한, 윤리심사안 심사기일 등을 규정함.
(안 제6조)

-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.(안 제9조)
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-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할 수 있게 함.
(안 제11조)
- 의원은 윤리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3조)
- 윤리심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사항과 위원회가 윤리심사 결과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고하는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)

□ 관련근거

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

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.

②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위원회에 간사(이하 “간사”라 한다)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⑥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을 위반하여 성남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 할 수 있다.

제5조(윤리심사요구와 회부) ①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(이하 “심사” 대상의원“이라 한다)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1/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,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서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6조(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) ①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,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 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,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 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, 소위원회의 출석과 근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.

제8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 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·상임위원장·의원(이하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)
2. 심사대상의원

제9조(의사)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심문) 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최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.

제11조(발언 및 변명) ①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②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.

③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할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제12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.

제13조(제척과 회피) ①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14조(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) ①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